

# 적립형공제급여 회원대여 상품설명서 (적립형공제담보대여, 보증보험대여)

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『적립형공제급여 회원대여』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대여규정, 대여 규정시행요령에 따릅니다.

## 상품개요

### ❖ 적립형공제 담보대여

-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이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본인 적립금의 90%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대여

### ❖ 보증보험대여

-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추가 대여
- 서울보증보험(주)의 정책에 따라 대상기관 소속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, 회원 및 재직기관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보증보험대여 자격 및 한도

대여자격	대여한도(적립형공제담보대여+보증보험대여)
적립형공제 담보대여 가능 회원 +연소득 2,000만원 이상	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% +1,500만원 이내
적립형공제 3년 이상 가입 +연소득 4,000만원 이상	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% +3,000만원 이내
적립형공제 5년 이상 가입 +연소득 5,000만원 이상	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% +5,000만원 이내
적립형공제 7년 이상 가입 +연소득 7,000만원 이상	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% +7,000만원 이내

\* 신용등급별 한도 차등 : 1~2등급 최대 7,000만원, 3~4등급 최대 6,000만원, 5~6등급 최대 5,000만원  
7등급 이하 보증보험대여 불가

## 거래조건

- ❖ 대여이율 : 연 3.52%(연체이율 6.52%)/변동금리

❖ 신청자격

- 대여 신청일 현재 적립형공제 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, 또는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회원(1인 1대여)
- 휴직 이외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대여 불가

❖ 대여(상환)기간

- 원금일시상환 : 3년 이내 1년 단위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10년 이내 1년단위, 대여금액별 차등

대여금액	원금일시상환	원리금균등분할상환
500만원 이하	최대 3년(12~36회) 만기 시 원금 상환	최대 3년(12~36회)
5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		최대 5년(12~60회)
5,000만원 초과		최대 10년(12~120회)

❖ (보증보험대여) 보증보험료

- 이용자 개인의 신용등급 및 보증보험사가 협약단체(공제회)에 적용하는 보험요율과 신용한도를 기준으로 계산

(보증보험료)

$$= [ \text{보증보험대여금액} \times 110\% \times \text{기본요율} \times (1 \pm \text{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,할증률}) + \text{신용한도초과금액} \times 110\% \times \text{추가요율} ] \times \text{가입기간}$$

\* 기본요율 : 0.662%

\* 할인,할증률: -45% (공제회보증대여의 거래실적 및 손해율에 따름, '21.04.01~22.03.31까지 적용)

\* 신용한도초과금액: (전체보증보험대여액-신용한도금액), 신용한도는 (표1) 조건별 신용한도 기준표를 따름

\* 추가요율 : 할인요율에 기본요율의 250%를 추가 0.3641%+(0.662% X 250%) = 2.0191%

(표1) 조건별 신용한도 기준표

회원년수	신용등급 (KCB)	보증대여금액			
		20백만원 이하	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	40백만원 초과 60백만원 이하	6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
7년이상	1~4등급	신용	신용	신용	신용
	5~6등급	신용	신용	신용	대여불가
5년이상~7년미만	1~6등급	신용	신용	신용	대여불가
3년이상~5년미만	1~6등급	신용	신용	대여불가	
3년미만	1~6등급	신용	대여불가		

\* 보증보험요율(2021.04.01 기준)

- 신용구간(기본요율 0.662% X 45%할인,0.3641%), 추가요율구간(할인요율 0.3641%+1.655% =2.0191%)

- 타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보험대여를 이용 중인 경우 신용구간이라도 추가요율이 적용될 수 있음

❖ 재대여

- 대여 중인 회원이 본인의 대여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대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재대여 신청
- 재대여 신청 시, 신규대여금에서 기존 대여 원리금을 차감하여 상환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(보증보험대여 시 보증보험료 추가 차감)
- \* 보증보험대여의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 변경에 따라 재대여 불가할 수 있음

**상환방법**

- ❖ 정기상환 : 매월 지정된 정기상환일에 대여상환계좌에서 자동출금
  - 1차 정기상환 : 매달 21일
  - 2차 정기상환 : 매달 25일 (1차 미출금건에 한하여 출금)
  - 정기상환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
- ❖ 중도상환 : 대여기간 만료 전 잔여대여금 전액 또는 일부(10만원 이상) 상환 가능
  -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, 비영업일 온라인 중도상환 가능
  - 정기상환일(21, 25일) 전후 2영업일 동안은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중도상환 제한
  - 보증보험대여 중도상환 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금액이 우선 상환처리하고, 보증보험료는 남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

**신청방법**

- ❖ 대여신청
  - 공제회 홈페이지 MY공제(대여신청)을 통해 신청
  - \* 적립형담보신청서류 : 별도 제출 서류 없음
  - \* 보증보험대여 추가서류 : 근로소득원천영수증(작년분), 재직증명서 각 1부
  - \* 보증보험대여 재대여의 경우 신규대여와 마찬가지로 추가 제출
- ❖ 중도상환 신청
  - 공제회 홈페이지 ▶ 공제 ▶ 대여사업 ▶ [상환안내](#)를 통하여 신청
- ❖ 대여상환계좌 변경
  - 공제회 홈페이지 ▶ 공제 ▶ 대여사업 ▶ [변경신청안내](#)를 통하여 신청

**유의사항**

- ❖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

- ❖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재대여 신청 시 잔여 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
- ❖ 적립형공제 연금 및 목돈급여는 담보대상이 아님

#### 기타 자주하는 질문

- ❖ 홈페이지 ▶ 공제 ▶ 소식&정보 ▶ 자주하는 질문 참조

#### 담당자 연락처

- ❖ 공제회 업무담당자 : 1577-0789(내선 4번)